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5. 8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2005. 8. 5공포시행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별표6의 시군자치구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70,000원에서 100,000원으로 개정)됨에 따라
 -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7조 중
 - 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70,000원으로 한다.”를
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100,000원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 중

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70,000원으로 한다.”를

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100,000원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조례 제0405호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부칙 제2조중 “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「구미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	개	정	안
제명 : <u>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</u>	제명 : <u>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</u>		
제7조(회의수당지급기준)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70,000원으로 한다.	제7조(회의수당지급기준)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100,000원으로 한다.		